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명시〉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75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명시	3
※ 참고자료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 점검표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23인

나. 발 의 일 : 2025. 6. 25.

다. 회 부 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舎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 <u>먼지</u>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 ----- ----- ----- ----- ----- <u>먼지·바이러스</u> 등의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¹⁾으로 하는 법률로, 학생·교직원 건강검사의 절차, 보건교육의 대상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4조²⁾는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환경위생은 학교시설의 환기·채광·온도·습도 조절,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 등 예방 및 처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식품위생은 식기·식품·먹는 물 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학교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며,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교육부 고시인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점검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³⁾.
- 예시로, 공기질 유지관리 물질 및 기준에 대해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⁴⁾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석면 오존 등 항목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 >

항목		유지·관리 기준
미세먼지	PM10	75 $\mu\text{g}/\text{m}^3$ 이하
	PM2.5	35 $\mu\text{g}/\text{m}^3$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m^3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30 $\mu\text{g}/\text{m}^3$ 이하
	톨루엔	1,000 $\mu\text{g}/\text{m}^3$ 이하
	에틸벤젠	360 $\mu\text{g}/\text{m}^3$ 이하
	자일렌	700 $\mu\text{g}/\text{m}^3$ 이하
	스티렌	300 $\mu\text{g}/\text{m}^3$ 이하
세균	총부유세균	800CFU/ m^3 이하
	낙하세균	10CFU/ m^3 이하

-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위생 유지·관리 항목에 바이러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3) 「참고자료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 점검표」 참조.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스를 추가하여 학생·교직원 등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이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다른 병원체와 달리 바이러스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균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⁵⁾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부유세균이 800CFU⁶⁾/m³ 이하로 관리되도록 규정하는 등 농도 측정 기준이 이미 확립되어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공기 중 농도 측정과 관련한 국제표준이나 인증된 제거기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교직원에게 집행 불가능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병원체(바이러스 포함)에 기인한 감염병의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 조치에 대해 중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6) CFU(Colony-forming unit): 단위 부피 또는 무게 당 집락 수

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은 이미 감염병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충분한 입법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⁷⁾은 교육부장관이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대책에는 바이러스에 기인하는 인플루엔자, COVID-19 등에 대해 환기기준 개발,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신축 시 표준 설계(안) 개발, 방역 물품 비축 모형 안내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참고로, 다중이용시설(정의상 학교는 미포함)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8,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7)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 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신중검토 - 바이러스는 고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현행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및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바이러스 원인 감염병 예방·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 - 바이러스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과 기준**이 없으므로, 환경위생 측면에서 바이러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결여된 과잉·중복입법으로 보이며, *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자가증식·분열 불가, 실험실 환경 등에서 숙주세포 기생 등 고도화된 작업 등 필요 **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특성 상, PCR검사 등 인체 진단기준만 있고, 환경위생 유지·관리기준은 없음 - 학교현장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유발할 우려가 높음
○ 시·도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신중검토 - 바이러스 측정·관리 불가, 바이러스 원인 감염병은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리 중
○ 환경부: 신중검토 - 현재 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 측정 관련 국제표준과 인증된 제거기술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 점검표⁸⁾

1. 개요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설립구분				교 실 수		일반 (실), 특별(실)	
전화번호				FAX 번호			
설비 현황	냉방	중앙 : 실, 개별 : 실		먹는물 시설	먹는물	상수도, 지하수, 기타	
	난방	중앙 : 실, 개별 : 실			저수조	개	
	환기	중앙 : 실, 개별 : 실			정수기	개(먹는샘물 : 개)	
급식시설		조리실(○, ×), 식당(○, ×)		체 육 장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기타 탄성우레탄 (○, ×)	
체육관 및 강당		체육관 : 실, 강당 : 실		기숙사		(○, ×) 신축(증·개축) 년도 :	

2. 학교시설 환경 측정개요

① 측정일자		②측정시간	
③ 측정장소			
④ 측정자	(소속)	(성명)	
⑤ 측정조건	건축물 및 교실의 특성, 측정지점(교사 평면도에 표기) 및 환기장치 가동여부, 외기 상태 등 기재		

3. 측정지점별 측정결과

3-1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측정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
	검사장소	검사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 번호	성능검 사일		
PM10 ($\mu\text{g}/\text{m}^3$)															
PM2.5 ($\mu\text{g}/\text{m}^3$)															
CO ₂ (ppm)															
HCHO ($\mu\text{g}/\text{m}^3$)															

8)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별지

측정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
	검사장소	검사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 번호	성능검 사일		
총부유세균 (CFU/m ³)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 ₂ (ppm)															
Rn (Bq/m ³)															
TVOC (μg/m ³)															
석면 (개/cc)															
오존 (ppm)															
진드기 등															
벤젠 (μg/m ³)															
톨루엔 (μg/m ³)															
에틸벤젠 (μg/m ³)															
자일렌 (μg/m ³)															
스티렌 (μg/m ³)															

3-2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외 항목

검사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
	검사 장소	검사 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 조 회사	모 델 명	제 작 일	고 유 번호		

4. 일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점검자 :)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특이사항
폐 기 물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횟수는 적당한가		
	폐기물 용기의 재질,구조 등은 적당한가		
	폐기물용기 및 배치장소는 청결한가		
	실험폐수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구내매점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는 청결한가		
	매점의 취급품목은 적정하며 관리요령을 준수 하는가		
먹는 물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상 수 도 및 하 수 도	상·하수도 도면이 비치되어 있는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물탱크는 정기적 청소와 점검을 하였는가		
	우수·오수시설 설비는 제기능을 하는가		
화 장 실	청결상태, 채광·조명, 환기상태가 양호한가		
	손씻는 전용시설과 소독설비가 있는가		
	비품비치 상태 및 시설설비는 고장이 없는가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기 타 환경위생	청소·소독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취 및 위생해충 등을 제거하여 없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수영조 욕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시설설비 및 부대시설의 관리는 양호한가		
	입영자의 위생·안전지도가 이루어지는가		

※ 작성기준 : 점검결과는 우수 "A", 보통 "B", 미흡 "C"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참조

5. 검사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및 근거자료(사진 등 첨부)